

<정답 및 해설 >

- (1) Niskanen은 관료가 자신이나 자기부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이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정부실패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답) ①
- (2) 공공선택이론은 관료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전통적인 Wilson식의 행정관을 비판하며 공공재의 생산과 소비에 경제학적 관점이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가정된다. 이는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접근이다. (답) ②
- (3) 외부주도형은 정부밖에서 사회문제 담당자들이 직접 정책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내부주도형은 반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답) ②
- (4) (답) ②
- (5) (답) ②
- (6)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 내지 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실·국장급 직위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답) ③

< 참 고 >

개방형직위는 엄밀하게 보면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다.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실·국장급 직위의 20%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그러나 계약직공무원이란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의 직위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를 말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따라서 개방형직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인사행정

개념인데 반하여 계약직공무원제도는 정부조직법상의 보직관리기준으로서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 즉 개방형직위는 실국장급(1-3급)을 대상으로 하나 계약직은 과장급을 포함한 모든 보조기관의 20%내에서 보할 수 있고 또한 개방형직위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충원가능하나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고로 개방형직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보할 수 있으나(내부공무원중에서 충원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은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충원될 수 없다. 즉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은 서로 중첩(overlap)되어 있는 개념인데 외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직위는 모두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내부에서 충원되는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나 외부에서 충원되는 계약직공무원중 과장급은 개방형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의 경우 모든 개방형직위가 계약직공무원은 아니나 개방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보한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개방형제도의 도입취지에 무색하게 2000.8현재까지 기채용된 개방형직위 25개중 4명(16%)만이 외부에서 채용되었다.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開放型職位】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政府組織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조**

⑥ - ⑦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의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이나 특정직으로 보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그 실시성위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임용방법 등)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개방형직위에 제4조·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라 한다)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7)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은 현재는 폐지되어 있다.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답) ⑤

(8) 영기준예산은 현재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모두 투자수익분석을 하는데 비해 기획예산 등 전통적인 예산은 새로운 사업만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답) ①

(9) 위생요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동료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동기요인(만족요인)은 사람과 직무간의 관계(직무에 대한 자아성취감이나 보람 등)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별개의 요인이다. 위생요인은 불만을 제거해 주는 요인이지만 동기요인은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답) ④

(10) 합법성은 법규만을 강조한 나머지 고객에 대한

융통성과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은 법규만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조과잉현상이나 행정편의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답) ⑤

(12) 정보화사회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다양화하되 서식은 표준화·통일되어야 한다. (답) ①

(13) 합리적 인간관이란 X이론이나 과학적관리론에 입각하여 구성원을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Y이론이나 민주적인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전략이다. (답) ①

(14) ②는 관리상의 비효율인 X의 비효율과 관련된다. 배분적 비효율이란 사업간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답) ②

(15) 교육훈련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화나 공무원의 사기양양방안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능률성 증진이나 능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16) 대리인이론의 핵심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통제가 안되어 대리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국회는 유권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대리인이자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주인에 해당한다. (답) ③

(17)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에 지원한 의존재원이므로 용도가 정해지거나 통제가 강하다. 나머지는 자주재원이다. (답) ②

(18) (답) ①

(19) ①과 같은 획일적인 감축은 곤란하다. (답) ①

(20) (답) ⑤